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변화의 필요성

이호선*

Big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Needs for Regulatory Change

Ho-Sun L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46252 Korea

요 약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한편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할 것인가 또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빅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 사회적 비용 측면, 민간과 정부의 빅데이터 구축과 결합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규제환경 형성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Many possibilities of Big Data has been discussed widely for several years. An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emphasized more strongly. During the process of integrating several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usability of Big Data, there are many problems occurred like the likelihood of the identification of one person,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used to create personalized services in the companies making and using Big Data. In this study, I summarize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f EU,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USA and domestic Big Data 3 Acts Amendment proposals. Also I discuss re-identification of de-identified information, social costs of the usage agre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ossible problems in construction and combination of private and public big data, political suggestions about settlement of regulatory environment.

키워드 : 빅데이터, 개인정보, 규제, 정책적 시사점

Keywords : Big Data, Personal Information, Regulation, Policy Suggestions

Received 13 September 2019, Revised 17 September 2019, Accepted 30 September 2019

* Corresponding Author Ho-Sun Lee(E-mail:ahmlhs@hanmail.net, Tel:+82-51-510-0874)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46252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19.23.12.1565>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I. 서 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빅데이터가 되는 한편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마케팅 방법이나 개인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시도들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 축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수집되는 것과 더불어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축적과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쪽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제한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IT서비스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며 기술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AI나 안면인식기술과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식별과 감시가 가능하게 되고 그에 따른 정부의 빅브라더화 가능성을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빅데이터 사용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활용 수준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국내의 현황을 살펴보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및 규제환경의 형성과정에서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해외동향

2018년 5월 EU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칙(GDPR)’을 제정하고 이의 적용을 실시하였다. GDP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먼저 정보주체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로 첫번째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접근권, 두번째 자신에 관하여 정확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주체의 정정권, 세번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관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 네번째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차단·제한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주체의 처리제한권, 다섯번째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계적으로 판독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 여섯번째 정보주체가 자신의 특별한 상황을 이유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반대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반대권, 마지막으로 정보주체의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에 대해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간 연결성을 제거하는 과정인 비식별 조치 중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 재식별 가능성을 감안하여 GDPR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명처리와 익명처리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GDPR에서는 가명처리는 추가적인 정보와 결합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를 재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익명처리의 경우 정보주체를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비가역적 조치가 포함되어 재식별 가능성이 사라지므로 GDPR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안전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행동규약의 입안과 인증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여 재화나 서비스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사전적 및 선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는 제품개발 기획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전체 생애주기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과 정책을 반영하여야 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제품개발과정이 종료된 후에 사후적이고 추가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닌 제품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서 사전적이고 선제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한 일반법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고 시장의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0년 1월 시행 예정인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에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효과적 방법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2]. 이 법에서는 특정소비자나 가계와 관련되어 식별하고, 서술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거나 합리적으로 연결되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조직을 사업자로 하여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데이터프라이버시권리로 알권리, 접근권, 삭제권, 거부권, 서비스평등권의 다섯 가지를 부여하며 그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가 부여된다. 이들 다섯 가지 권리 중 알권리는 사업자가 모든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요청한 특정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수집, 판매 또는 공개에 관한 개별적 공개를 통해 검증가능한 소비자요청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접근권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특정 부분 사본을 우편이나 전자방식으로 전달받아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사업자서버와 서비스공급자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삭제권과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소비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서비스평등권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CCPA의 위반에 대해 사업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 의한 민사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의 사적소송에 의해 소비자당 위반당 100달러에서 700달러 또는 실제손해 중 높은 것으로 법정손해배상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2003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2015년 개정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의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내각총리대신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여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1]. 먼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단말ID, 얼굴인식데이터, 위치 정보, 전자우편 주소와 같은 개인식별부호까지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또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더 이상 재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정보를 익명가공정보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사업 창출이라는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Ⅲ. 국내동향

우리나라도 해외의 개인정보 관련 움직임을 감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경제를 위한 빅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대통령의 데이터경제에 대한 의지 천명과 더불어 2018년 11월 발의되기도 하였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2018년 이후에만 32개의 개정안이, 정보통신망법은 무려 80개, 신용정보법은 6개가 소관위에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다[3].

개인정보 보호 및 빅데이터3법의 개정논의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사안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감독기능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중복규제와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2]. 다음으로 법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과 비식별 조치에 대한 사항이 현재는 관계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정한 지침 수준에서 정하여져 있는 것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 또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안전 조치 책임의 자율성 강화 및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설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련된 규율의 강화와 같은 사안 또한 제기되고 있다[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중 가장 대표적인 안으로 2018년 11월15일 발의된 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안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및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에서의 논의를 반영하여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다. 이 발의안에서는 앞서의 지적들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정의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집합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해당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하며, 가명정보의 처리 및 정보집합물의 결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고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벌,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완화 및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정비,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제 정비 및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등에 관한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위를 격상하는 추진체계의 일원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4]. 이와 관련하여 신용우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관련한 내용의 검토 필요성, 기준의 명확화,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 과도한 법정형의 완화와 행정규제 강화의 검토,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정보주체로의 이익 환원 방안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5].

함께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같은 날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동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6]. 또한 같은 날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금융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여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가명조치를 한 개인신용정보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본보존 등을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의 빅데이터 사용의 부작용 방지 안전장치로 가명조치에 사용한 추가정보는 일정한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한편 이들 가명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재식별이 가능하게 된 경우 처리의 즉시 중지 및 정보의 즉시 삭제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익명조치에 대한 외부 적정성 평가 후에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도록 하며, 이종 산업분야 간의 데이터 결합 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만 가능하도록 하여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더해 식별가능하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과징금과 처벌을 명문화하였다. 다음으로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을 강화하여 자료제출요구·검사권·출입권·질문권 및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

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의 정비 및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개편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도입,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 강화,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내실화,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자동화평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권 보장과 같은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이 포함되었다[7].

IV. 결 론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내의 법제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제화 동향에서 한가지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은 비식별화 조치로 생성된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으로 인해 재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EU GDPR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의 가명정보의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명정보가 재처리를 거쳐 식별가능한 정보가 된다면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재식별을 위한 기술이 발전할수록 비식별화된 정보와 개인정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신용정보처리에 대한 익명조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비식별화된 정보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용정보의 경우 향후 데이터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여러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식별가능성이 낮은 정보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 동의(Opt-in) 대신 사후 부동의(Opt-out)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별가능성이 낮은 정보들을 조합하여 식별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앞서와 마찬가지로 비식별화된 정보와 개인정보의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현행의 개인정보 사용동의를 지나치게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동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에 정의된 소비자의 서비스평등권과 같은 개념의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에서의 빅데이터 구축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안전성과 보안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EU GDPR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하여야 할 기술적·관리적 안전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의무준수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규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빅데이터 구축과정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고 할 때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도 신용정보회사의 정보집합물을 제3자 보유의 정보집합물과 결합할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의 과징금과 징역 또는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각종 데이터들과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도 민간이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별가능성이 낮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민간의 빅데이터와 정부보유 빅데이터가 합쳐져 식별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빅데이터가 만들어진다거나,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통제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회신용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으로의 진화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의 법제화 과정에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 규제정책의 변화과정이다.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은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반영되어 법제정 초기부터 과도한 제약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반면 법제화 이후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개정이나 규제의 변경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경향 또한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사전에 예측된 여러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측면이 있어왔으나 법제화 이후의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법과 규제가 사회변화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 또한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공인인증으로 대표되는 금융거래에서의 규제사항이다. 공인인증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공인인증서 기술이 당시의 가장 최신의 기술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규제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으로도 적절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이후 개인의 식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수 등장하고 환경 변화가 크게 일어났음에도 규제환경은 공인인증서 도입 당시의 기술 수준에 맞춰 정체되어 버렸고, 이후의 대체기술의 등장과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오히려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의 가명정보의 처리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 또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도한 제약으로 발현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라는 기존의 규제환경이 정체됨에 따라 향후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규제책을 모색하는 것뿐 아니라 향후의 지속적인 규제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금지된 것 이외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나 개인정보 활용은 허용하나 오남용, 유출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해야 하는 빅데이터 사용자의 책임 확대와 같은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CCPA의 위반에 대해 공적제제와 더불어 사적소송으로 개인소송 및 집단소송이 가능한 점과 그 법정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법체제에서 집단소송의 도입 역사가 길지 않고 그 손해배상액도 크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보호의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사법체

계의 변화를 피하는 것 또한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T. Y. Kim, "Foreign trends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t's implications," *NARS Analysis of Recent Issues*, vol. 23, Oct. 19 2018.
- [2] C. S. Kim, "Major contents in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and their implications," *KCA Trends in Consumer Policy*, vol. 93, Sep. 28 2018.
- [3] National Assembly. Bill Information [Internet]. Available :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4] J. K. In, B. H. So, I. K. Hong, W. S. Woo, H. J. Kim, K. S. Song, I. Y. Lee, K. S. Yoon, M. K. Kim, C. I. Kang, B. D. Min, J. J. Lee, M. H. Kwon, and B. K. Kim, "Amendment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National Assembly Bill 16621 [Internet]. Available :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5] Y. W. Shin, "Issues and Policy Recommendation for Laws ab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Era of Data Economy," *NARS Issues and Points*, vol. 1593, Jul. 3 2019.
- [6] W. R. Noh, J. I. Byun, J. G. Lee, S. S. Kim, E. H. You, C. H. Lee, K. O. Park, K. H. Song, M. S. Ahn, and J. K. In, "Amendment to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 act," National Assembly Bill 16622 [Internet]. Available :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7] B. W. Kim, H. D. Yoon, J. S. Jeon, G. G. Eo, H. Y. Kim, J. G. Lee, B. W. Kang, W. Y. Choi, B. D. Min, C. Y. Lee, H. Y. Ahn, Y. J. Koh, and W. R. Noh, "Amendment to credit information act," National Assembly Bill 16636 [Internet]. Available :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이호선(Ho-Sun Lee)

2010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2012년~현재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기업재무, 재무금융교육, 기업규제정책